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11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11. 10.
- 회 부 일 : 2021. 11. 17.

2. 제안이유

기금별 존속기한이 2021. 12. 31.로 만료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등 10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 12. 31.로 5년 연장하고,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상의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근거법령 정비, 기금명칭 정비(안 별표)

- 존속기한 연장 기금

연번	기금 명칭	현재	변경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2	체육진흥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3	자활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연번	기금 명칭	현재	변경
4	노인복지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5	양성평등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6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7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8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9	도로굴착복구 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10	아동기금	2021.12.31.(5년)	2026.12.31.(5년)

○ 근거법령 정비

기금명칭	현재	변경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기금 2. 체육진흥기금 3. 노인복지기금 4. 중소기업육성기금 5.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7. 도로굴착복구기금 8. 한옥보전지원기금 9. 기후변화기금 10. 사회투자기금 11. 아동기금 12. 장애인체육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1.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 기금명칭 정비

현재	변경	근거법령
자활기금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조례 제834호 ¹⁾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공무원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2016년 단체협약 ²⁾ 에 따른 조례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159조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1) 2010. 12. 24. 조례 제834호로 공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하여, “자활기금” 과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을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
- 2)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을 “공무원” 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제 284회 임시회에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명칭 변경

다. 입법예고 : 2021. 9. 30. ~ 2021. 10. 20.

라.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9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또한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먼저, 존속기한이 2021. 12. 31.로 만료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등 10개의 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26. 12. 31. 까지 5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등 12개의 기금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자활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